

일반공급 추첨제 서류안내

※ 부적격 확정 당첨자는 검수 기간 내 당첨자 삭제 및 계약부활 신청을 하셔야 합니다. ※ 검수 기간 이후 부적격에 따른 당첨자 삭제 및 계약부활 신청이 불가하며, 이에 따른 불이익은 당첨자 본인의 책임임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. ※ 정당한 당첨자로 판명된 경우에만 정당계약 체결이 가능합니다.

구분	서류유형		해당서류	발급 대상	서류발급기준 및 유의사항
	필수	추가 (해당자)			
공통 서류	○		신분증	청약자(본인)	주민등록증, 운전면허증 또는 여권(여권 제출 시 여권정보증명서 추가 제출)
	○		인감증명서, 인감도장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	청약자(본인)	본인 발급용에 한함(용도 : 주택공급계약 체결용) /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발급 시 대리인 불가
	○		주민등록표등본	청약자(본인)	주민등록번호, 주소변동사항, 세대주와의 관계 등을 포함하여 상세로 발급
	○		주민등록표초본	청약자(본인)	인적사항변경내용, 주소변동사항, 세대주성명/관계 등을 포함하여 상세로 발급
	○		가족관계증명서	청약자(본인)	성명, 주민등록번호(세대원 포함) 등을 포함하여 상세로 발급
	○		혼인관계증명서	청약자(본인)	성명, 주민등록번호 등을 포함하여 상세로 발급
	○		출입국사실증명	청약자(본인)	주민등록번호 전체 표기, 기록 대조일을 본인 생년월일부터 입주자모집공고일로 지정하여 발급
		○	주민등록표등본	배우자	동일한 주민등록표등본에 배우자가 등재되어 있지 않은 경우
		○	가족관계증명서	배우자	주택공급신청자 또는 배우자의 주민등록표등본에 배우자의 직계존 비속이 등재되어 있는 경우
		○	복무확인서	청약자(본인)	해당 주택건설지역 이외 지역에 거주하는 분이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10년 이상, 25년 이상 장기복무 군인 자격으로 신청한 경우
해외근무자 (단신부임)	○		해외체류 증빙서류	본인	공급신청자가 생업에 직접 종사하기 위해 국외에 체류하고 있는 경우 (생업에 종사증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)
	○		출입국사실증명	배우자 및 세대원	청약자가 해외에 체류 중인 기간 내 세대원 및 자녀 중 한명이라도 신청자와 동일국가 체류기간 여부 확인 ※ 기록대조일 : 생년월일 ~ 현재로 설정(주민센터 또는 정부24), 출입국 기록출력 여부를 Y로 설정하여 발급
제3자 대리인 신청 시	○		인감증명서 및 인감도장	청약자(본인)	발급기준 : 본인 발급용 / 용도 : 위임용 / 본인서명사실 확인서 제출 시 대리인 불가
	○		위임장	-	주택전시관 비치(주택공급신청자의 인감도장 날인 / 인감증명서와 대조)
	○		신분증, 인장	대리인	대리인 주민등록증, 운전면허증 또는 여권(여권 제출 시 여권정보증명서 추가 제출)
부적격 통보를 받은 자	○		해당 주택에 대한 소명자료	해당주택	기타 무주택자임을 증명하는 서류
	○		당첨사실 소명자료	해당서류	해당 기관의 당첨사실 무효 확인서 등 사업주체가 요구하여 인정하는 서류

※ 청약자 본인 이외에는 모두 대리 신청자(배우자, 직계존·비속 포함)로 간주하며, 공통/추가 서류 외 대리인 신청 시 서류를 추가로 구비하여 합니다. ※ 서류 접수 시 모든 서류는 '상세표기'로 발급하여야 하며,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이후 발급 분만 해당됩니다. ※ 제출 서류 중 직인 날인이 없거나 직인이 날인된 서류를 팩스로 전송 받은 경우에는 인정하지 않습니다. ※ 서류 접수 시 자격 검증을 위해 안내 서류 외 추가로 검증 서류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. ※ 상기 내용은 소비자의 이해를 돕기 위해 제작된 것으로 작성 및 편집 과정에서 오류가 있을 수 있으며, 오류가 있을 시 관계법령이 우선합니다. 또한 청약신청 전 반드시 입주자모집공고를 본인이 직접 확인 후 청약하시기 바랍니다.